

##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- 226호

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11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###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변호사 자격자 등에게 제외되었던 ‘실무수습’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자의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(법률 제 13843호, 2016. 7. 28.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 마련과 신속한 인허가 행정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실무수습의 내용, 기관, 사전 경력의 일부 인정을 규정(안 제12조)  
실무수습을 ‘이론교육(400시간 이상)’과 ‘현장연수(10개월 이상)’로  
구분하고, 실무수습 기관 및 실무수습의 일부 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 
규정함

나. 특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, 인허가 간주 규정  
신설(안 제14조, 제15조, 제16조의2)

특허법인 및 특허법인(유한)의 설립, 정관변경 인가 신청시 특허청장이  
인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 
않고 처리기한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 
신설함

다.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작성하는  
규정 신설(안 제18조의4)

변리사자격·징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
및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신설함

라.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(안 제24조)

변리사법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  
함에 따라 이 영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분산

규정된 위탁 업무를 이 영으로 통합하여 규정함

### 3. 의견제출

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: 산업재산인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>정보마당>법령자료>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※ 보내실 곳

-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(우편번호: 35208)
- 전화: (042)481-5187, Fax: (042)472-3421
- 이메일: [dhyeo@korea.kr](mailto:dhyeo@korea.kr)